

의안번호	2214671
의 퇴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5.12.15.
추계번호	25D62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29억 9,200만원, 2031년 430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132억 1,100만원(연평균 426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2,992	42,063	42,385	42,715	43,053	213,211	42,642

주: 본 추계는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공익신고 등이 현행 대비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를 도입함(제1호)	의무규정
2	안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2	안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기관부담금 포함)·자산취득비, 교육 비용, 정보시스템 증설 비용,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안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증원인력의 규모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제출한 조직 규모와 인력 증가분을 참고하여 추정함
 - 현 행: 열거주의, 6대 분야 497개 법률
 - 개정안: 포괄주의, 6대 분야 1,691개¹⁾ 법률(현행 대비 3.4배)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조직과 인력 증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2】 공익신고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조직 규모 추정

【현 행】 1국 6과 1팀 / 73명	【전 환】 1실 2관 1국 17과 / +147명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14] 부패심사과 [8] 공공재정환수관리과 [17] 보호보상정책과 [7] 신고자보호과 [13] 신고자보상과 [9] 공익심사팀 [5]	신고조사국 조사기획과 [8] 신고접수과 [16] 부패조사과 [8] 공익조사1과 [15] 공익조사2과 [14] 공익조사3과 [14] 공공재정환수관리과 [17] 보호보상실 보호정책관 보호보상정책과 [14] 신고자보호1과 [15] 신고자보호2과 [15] 신고자보호3과 [15] 신고자보호4과 [15] 보상지원관 신고자보상1과 [13] 신고자보상2과 [13] 신고자보상3과 [13] 공익신고법률지원과 [12] 공익신고해석과 [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그밖의 정보- 법령통계(2025.12.9. 기준): <https://www.law.go.kr/lawStatistics.do?menuId=13&subMenuId=557>

[표 3] 공익신고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직급별 증원인력 추정

구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공익신고 제도운영 ¹⁾		2	3	2				7
공익신고 접수 ²⁾	1	1	3	4	1			10
공익신고 처리 ³⁾	2	2	15	17	2			38
공익신고자 보호 ⁴⁾	2	4	18	15	3			42
공익신고자 보상 ⁵⁾	2		12	8	5		3	30
공익신고 법률지원 ⁶⁾	1	1	4	4	1	1		12
공익신고 해석 ⁷⁾	1	2	2	1	2			8
합계	9	12	57	51	14	1	3	147

주 1) 공익신고 제도운영, 공익신고 운영현황 실태조사,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및 홍보 등(보호보상정책과)

2) 청렴포털 시스템 운영, 신고접수 등(신고접수과)

3) 공익신고 사건 조사, 이첩송부사건 조사수사결과 확인요지작성 및 통지, 공익신고 이의신청 조사 처리, 공익신고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공익신고 상담,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등 민원, 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그 외 국회 대응 등 부대업무(공익심사과)

4) 보호사건 접수·처리, 보호사건 이행점검,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보호상담 등(신고자보호과)

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보상·포상·구조금 신청처리(신고자보상과)

6) 공익신고 판단, 연구용역, 보호보상여부 기준 정비, 판례, 소송대응 등(공익신고 법률지원과)

7) 공익신고 유권해석, 관계부처 해석협의체 가동, FAQ·유권해석 사례집(공익신고해석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안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비용, 정책연구용역비,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은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4] 공익신고제도 교육 비용 추정: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공익신고제도 교육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원×3종×200부×20회	120,000
	교육장 임차료	3,500,000원×20회	70,000
	현수막, 배너 등	500,000원×20회	10,000
	소계	—	20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표 5] 정책연구용역비 추정: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예산액
정책연구용역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범위 연구	50,000
	사적 분쟁과 공익신고의 경계 등 법리·사례 분석	100,000
	표준 각하 사유서·보호결정서 등 양식·절차 연구	50,000
	소계	20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표 6] 정보화시스템(청렴포털) 증설 비용 추정: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정보화시스템 증설	CPU·메모리 증설	▶ CPU 증설=49.6백만원 - 6.2백만원×4 CORE×WAS서버2식 ▶ 메모리 증설=48백만원 - 1.5백만원×16 GB ×WAS서버2식	100,000
	스토리지 증설	▶ 스토리지 증설 1억 - 10TB NAS×1식=100백만원	100,000
	보안·문서편집·모니터링 솔루션	▶ 보안=66.4백만원 - DB암호화 SW 8.3백만원×8식 ▶ 문서=128백만원 - 웹한글편집기 SW 8백만원×16식 ▶ 문서=91.2백만원 - 웹문서뷰어 SW 5.7백만원×16식 ▶ 모니터링=6.4백만원 - WAS모니터링 SW 3.3백만원×8식	300,000
	소계	-	500,000
유지보수	유지보수용역비	▶ 일반용역비=83백만원 - 응용SW개발자 평균 임금(월 6,943,457원)×12개월	83,000
합계		-	583,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30%)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의 증가 배수(현행 대비 3.4배)에 최근 5년(2020~2024년) 보상 대상가액의 평균(29,392,783천원)과 보상률(30%)을 적용한 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평균(1,843,200천원)을 차감하여 추정함

[표 7]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액 및 보상대상가액 현황: 2020~2024

(단위: 건, 천원)

구분	신청 건수	처리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지급	기각	종결	소계			
2020	405	249	16	171	436	2,036,000	25,258,924	1,560,901
2021	322	138	14	145	297	2,036,000	10,312,828	811,290
2022	281	99	32	138	269	1,877,000	48,536,415	2,255,828
2023	252	45	27	179	251	1,717,000	15,080,041	813,790
2024	290	55	49	216	320	1,550,000	47,775,708	1,149,733
평균	-	-	-	-	-	-	29,392,783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안 제2조제1호)

1) 인건비

□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는 직급별 증원 규모(총 147명)에 직급별 인건비(보수, 제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등 포함)를 곱하여 추계함

○ (인건비) 2025년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²⁾을 적용하여 추정함

□ 2025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인건비는 다음과 같음

[표 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2025년

(단위: 명, 원)

구분	증원	1인당 평균 인건비	구분	증원	1인당 평균 인건비
4급	21	120,521,056	7급	14	52,114,421
5급	57	96,779,167	8급	1	47,040,400
6급	51	70,049,475	9급	3	40,844,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원인력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4급	2,654	2,718	2,783	2,850	2,918	13,923
	5급	5,784	5,923	6,065	6,211	6,360	30,343
	6급	3,746	3,836	3,928	4,022	4,119	19,651
	7급	765	783	802	821	841	4,012
	8급	49	51	52	53	54	259
	9급	128	132	135	138	141	674
합계		13,126	13,443	13,765	14,095	14,433	68,86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10]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증원인력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인력 증원	147	-	-	-	-	147
	자산취득비 단가	5.080	5.182	5.285	5.391	5.499	-
합계		746	-	-	-	-	74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3) 교육 비용, 정책연구용역비,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안 제2조제1호)

□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교육 비용, 정책연구용역비,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은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추정함

- 교육 비용과 정책연구용역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은 2027년의 경우 증설 비용과 유지보수용역비를 합산하되, 2028년부터 유지보수용역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 비용, 정책연구용역비,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1]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교육 비용 등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교육 비용	200	200	200	200	200	1,000
정책연구용역비	200	200	200	200	200	1,000
정보화시스템 증설 비용	583	83	83	83	83	915
합계	983	483	483	483	483	2,91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8억 5,500만원, 2031년 149억 1,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25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 (안 제2조제1호)	인건비	13,126	13,443	13,765	14,095	14,433	68,862
	자산취득비	746	—	—	—	—	746
	교육 비용 등	983	483	483	483	483	2,915
	합계	14,855	13,926	14,248	14,578	14,916	72,5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안 제26조의2)

-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증가 배수(현행 대비 3.4배)에 최근 5년(2020~2024년) 보상대상가액의 평균(29,392,783천원)과 보상률(30%)을 적용한 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평균(1,843,200천원)을 차감하여 추정함
- 추계결과,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3]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배,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고자 보상금 정률제 전환 (안 제26조의2)	법률증가배수	3.4	3.4	3.4	3.4	3.4	—
	보상대상가액(평균)	29,392	29,392	29,392	29,392	29,392	—
	보상률	30%	30%	30%	30%	30%	—
	현행 편성예산	1,843	1,843	1,843	1,843	1,843	—
합계		28,137	28,137	28,137	28,137	28,137	140,68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29억 9,200만원, 2031년 430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132억 1,100만원(연평균 426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공익침해 포괄주의 전환 (안 제2조제1호)	14,855	13,926	14,248	14,578	14,916	72,524	14,505
신고자 보상금 정률제 전환(안 제26조의2)	28,137	28,137	28,137	28,137	28,137	140,687	28,137
합계	42,992	42,063	42,385	42,715	43,053	213,211	42,642

주: 본 추계는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공익신고 등이 현행 대비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공익침해행위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라 공익신고 등이 현행 대비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